

2003년도 임업정책자금 집행

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연간 산림사업 총 면적

1) 목 적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에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산불감시원 : 100ha(단 6월이내)
- 임도유지관리 : 연장 10km(단 2월이내)
- 휴양림관리 : 1개소(연중)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2) 지원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임업경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표고재배 : 200m²(연중)
- 밤나무관리 : 10ha(6월이내)
- 기타사업에 필요한 관리인은 용자취급기관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적용

다. 금 액 : 15,200백만원

3) 지원규모

가. 사업량 : 152명

나. 용자단비 : 사업별 실소요 단비

- 관리인 인건비 : 일당 41,000원
- ※ 용자단비중 관리인 1인당 관리 기준
 - 산림사업 : 연면적 100ha(실제 사업 실행기간에 한함)
 - 산림사업 연면적은 조림, 풀베기,

4) 지원대상자

가. 선정권자 : 산림조합장

- ※ 독립가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임업후계자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의 추천경유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 1인당 융자총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법인·모범독립가 12억원, 우수독립가 10억원, 자연독립가 7억원
 - 임업후계자 3억원
 - 신지식임업인 1억원
- ※ 당년도 선발된 자에게는 융자 지원 가능

다. 사업계획심사 : 산림조합장

5)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업명	구분	금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처	상환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장기수사업	연3%	35년	20년	15년	0독립가 사업자당 3억원이내 0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이내 0신지식임업인 사업자당 1억원이내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
	임도시설		20년	10년	10년		
	자연휴양림조성		20년	10년	10년		
	기타		15년	5년	10년		

나. 자금용도 : 산림사업비, 임도신설 또는 보수, 휴양림조성·운

영에 필요한 자금, 산림사업용 가지재 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 임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다. 자금사용

- 임야매입자금
 - 임야매입은 관인매매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후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 대출
 - 임야매입가격이 평당(3.3058㎡) 10,000원 이상인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필지별 지적의 90% 이상 면적이 생산임지일 경우)에 한함
 -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기수 사업 적용범위
 - 장기수 조림, 육림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 장기수 조림, 육림용으로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 자연휴양림 조성자금
 -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자 및 운영자
- 임도신설 및 보수자금 : 임도시설 또는 보수
- 기타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라. 용자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6) 사업별 지원계획

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단위	소요자금		
			총사업비	용자	자부담
계	152	명	15,200,000	15,200,000	-
독립가	60	명	6,000,000	6,000,000	-
임업후계자	82	명	8,200,000	8,200,000	-
신지식임업인	10	명	1,000,000	1,000,000	-

※ 용자대상자(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별로 용자신청 및 실적이 적거나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조정 가능

나. 분기별 사업추진 및 용자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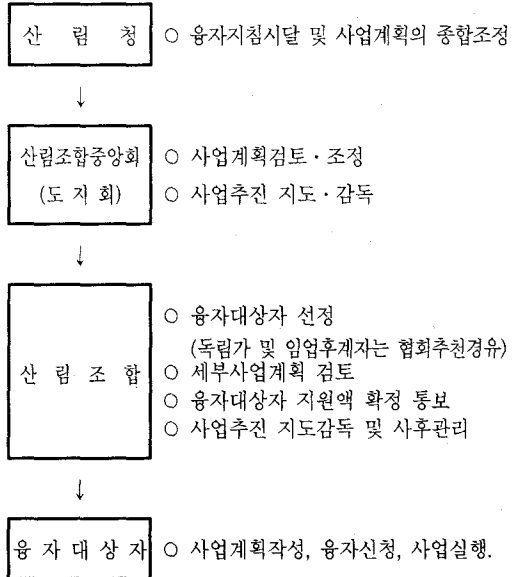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분기별	주요사업추진계획	소요자금		
		계	보조	용자
계	100%	15,200,000	-	15,200,000
1/4	33%	5,000,000	-	5,000,000
2/4	33%	5,000,000	-	5,000,000
3/4	34%	5,200,000	-	5,200,000
4/4	-	-	-	-

7) 사후관리

-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나. 기타사항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용자대상자별로 용자지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시행.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원한 용자사업의 계획대 집행사황을 수시로 확인.

8) 사업추진체계



2. 산지 목재 비축 지원

1) 목 적

- 산림에 대한 장기적·계획적인 투자로 산림자원 증대 도모
- 산업용으로 공급 가능한 산림내 입목을 계약에 의하여 비축

2) 지원방향

-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주 예상수입액의 일부를 지원

3) 지원규모

- 가. 사업량 : 30천m³
- 나. 용자단비 : 산주 예상수입액의 70%
- 다. 사업비 : 831백만원

4)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 나.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산림
 - 산림안의 입목이 산림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별기령 중 수종별 일반기준별기령을 경과한 산림으로서 우량대경재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인공림·천연림 포함)

-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나 시업제한이 없는 산림

- ※ 암석지·급경사지 또는 불량임지로써 장기적으로 대경재로 육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심사 : 관할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한 후 지원여부 결정

5) 용자요령

가. 용자조건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산지목재비축	연리 3%	10년 일시상환	1억원 (독림가 또는 입입후계자는 2억원)	산주 예상수입액의 70%

- 용자금액 산정방법
 - m³당 목재가격×산주예상수익율(20%)
×용자지원 비율(70%)×입목축적량
 - m³당 목재가격은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의 『임산물 유통정보』에서 제공하는 수종별 목재가격의 2등급 가격을 적용하되, 조재길이 “1.8m 이상”의 가격과 “2.7m 이상”의 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적용(삼나무, 편백 등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수종의

- 경우에는 낙엽송의 가격을 적용)
- 산주예상수익율 : m²당 시장가격에서 벌채·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산주가 실제로 얻는 소득의 평균비율임
- 입목 축적량 : 지원대상 산림을 현지조사(표준지 조사방법 적용 가능)하여 입목축적량 산정

나. 자금용도 : 산지목재비축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
- (2) 영림계획을 편성하고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3) (1),(2)이외의 지원대상자

라. 채권보전 : 용자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제규정에 의함

마. 용자취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6) 지원계획

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용자지침이 시달되는대로 각 시·군 조합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산림조합중앙회(도지회 경유)에 자금

신청하면 이를 취합하여 금년도 예산액 등을 감안, 사업량 및 지원금액 결정

나. 분기별 사업추진 및 용자지원 계획

(단위 : 천원)

분기별	주요사업추진계획	소요자금		
		계	보 조	용 자
계	830,986	830,986	1,186	829,800
1/4	산지목재비축제도	83,573	593	82,980
2/4	"	415,493	593	414,900
3/4	"	331,920	-	331,920
5/5	"	-	-	-

※ 시·군산림조합 신청서를 취합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도별 배분

7) 사후관리

가. 지원자 :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계약서에서 허용된 행위 이외에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산림조합 : 목재비축림의 관리상태 등 사후관리

다. 입목벌채 등 행위제한

-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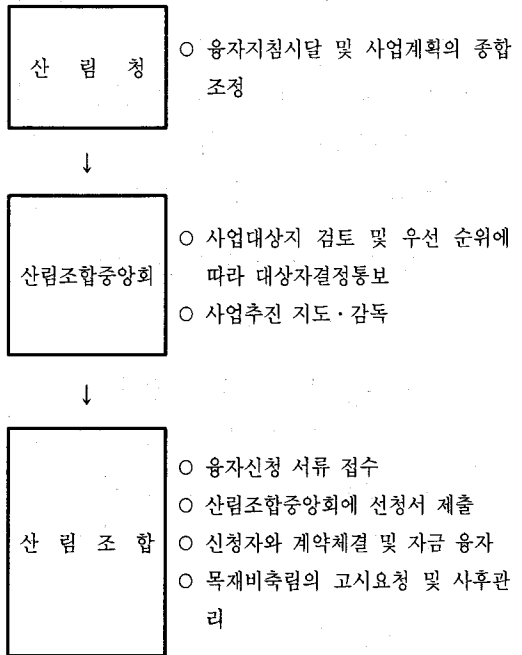
- 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 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임지안에 단목 상태로 고사된 나무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 입목과 분리되어 있는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 입목·뿌리·토석외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해제

- 산림소유자가 목재비축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는 등 입목 축적이 변동된 경우

8) 사업추진체계



2004년도 독립가육성자금 용자 신청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우리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목재 비축 계약서

대상입목의 표시

- 산림소재지 :
- 면 적(m²) :
- 수 종 :
- 수 량(m³) :
- 용자 금액 :

위 입목에 대하여 산림조합장을 “갑”으로 하고 입목소유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목재비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목재비축립”이라 한다)한다.

제 1 조 목재비축립 안에서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서에서 허용된 행위이외의 산림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없으며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 2 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계약(용자)금액은 원정으로 하며 계약체결후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지급한다. “을”은 용자금에 대한 이자(연리 %)를 매년 “갑”에게 납부하고 원금(용자금액)은 계약만료일까지 상환한다.

제 4 조 “을”은 목재비축립내의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 포함)에 가입하고 저장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5 조 목재비축립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갑”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지안에 단목 상태로 고사된 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입목과 분리되어 있는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5. 입목·뿌리·토석외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6. “을”이 융자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원금 또는 이자에 해당하는 양의 입목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 6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가 목재비축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는 등 입목 축적이 변동된 경우
3. 병해충 방제, 산사태 방지, 산불방지 또는 피해목 제거 기타의 사유로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축적이 변경된 경우
4. 산림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 7 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해제한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여“갑”에게 반환한다.

제 8 조 “을”은 이 계약조항외에 산림관계 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 계약서중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목재비축림설정자(갑) (인)

입목소유자(을)

성 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200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시책

- ① 지난 1월 14일 전국산림관계관 회의 자료중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②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내용을 소관별로 소개하나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입업정책국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보전임지내 농업인주택 허가요건 강화	○농·임·어업인 등 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가 주택 시설 가능	○농·임·어업인 주택용도로 한정하기 위해 허가대상 기준 강화	○산림법시행령 (2002.11.6)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전원주택용도로 허가받 는 사례를 차단함으로써 무분별한 보전임지전용 억제
2.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제한기간 강화	○보전임지전용허가 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3년간 용 도변경 제한	○보전임지 전용 허가후 목적 사 업 준공된 시점부터 5년간 용 도변경 제한	○산림법시행령 (2002.11.6)	○용도변경 제한을 강화함 으로써 무분별 한 보전 임지 전용 억제
3.입목 축적 조사서 첨부	< 신 설 >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산림형 질변경허가, 채석허가 신청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첨부	○산림법시행규 칙 (2002.11.14)	○입목 축적조사 작성 주 체 명정으로 민원 소지 사전 차단 및 영림기술 자 인센티브 부여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4.산지관리법 제정 시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조림비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변경되고, 부과금액이 인상되며 보전·준보전 산지에 따라 차등 부과 ○ 전용허가 심의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산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보전임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산지전용허가로 통합되고, 허가기준은 강화 ○ 주요 산줄기 능선부 등이 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항구 보존 ○ 재해방지명령제 및 채석업에 대한 자격제한 시행 ○ 광업권 설정지에서의 무단채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 산지관리법 (2003. 9월 시행예정)	○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도모
5. 신고에 의한 관상수 재배 면적 확대	○ 농업인 등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1만 제곱미터까지 신고로서 관상수 재배	○ 농업인 등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3만제곱미터까지 신고로서 관상수 재배가능토록 면적 확대	○ 산림법시행규칙(2002.11.14)	○ 규제완화로 농업인 및 관상수 생산자의 소득증대 기반 확대
6. 산림의 형질 변경 기준 완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림형질 변경 기준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사도, 입목 축적 등 산림의 형질변경기준 적용 예외	○ 산림법시행규칙 (2002.11.14)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시 적용 기준 완화
7. 복구준공검사 강화	○ 산림형질변경만으로도 복구준공 가능	○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주된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복구준공검사 처리	○ 시 책 (2003.1.1)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편법을 이용한 허가 사례 차단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8.산림형질 변경복구 설계	< 신 설 >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 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복구설계서는 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	○산림법시행규칙(2002.11.14)	○산림복구는 환경·생태·수목·조경·사방 등 전문설계기술이 필요하므로 산림법에서 정한 '산림 토목기술자'에 의한 복구설계를 의무화
9.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상시 운영 체제 도입	○ 지방산림관리청에만 유급 전문진화대 인력 지원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구성 및 운영 지원 - 시·군당 12명, 연간 120일 사역 - 국고지원 4,618백만원	○산림법 제100조(2003.1.1)	○산불방지 전문인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진화
10.지방 격납고 확충	○전국 7개지역 지방 격납고 운영(김포, 원주,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전국 8개권역 격납고 설치 - 충청권(진천) 격납고 1차년도 공사 추진('04년 준공 예정)	○산불관리통합 규정 제13조 (2003.1.1)	○전국 30분내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사전 차단
11.현장 진화 지휘 능력 향상	< 신 설 >	○시·군 산불담당과장 대상 진화 지휘반 교육 실시 - 280명, 1박 2일	○산불관리통합 규정 제32조 (2003.1~2월)	○산불 현장에서 판단 능력 향상으로 초동 진화 및 안전 사고 예방 - 적절한 진화자원 투입 및 효과적인 산불진화도모
12.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 제거	○논·밭두렁 공동 소각 사업 실시 (국고보조 75백만원)	○전년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 제거 사업을 앞당겨 실시 하며 논·밭두렁 소각, 폐기물수거 등 실시(국고보조 460백만원)	○산불관리통합 규정 제7조 (2002.11.6)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산불 원인 사전 차단
13.임업특정 연구사업 과제선정	○대학·산업체 등 외부 연구기관에 과제 자유공모방식 등으로 추진	○과제 확정 후 지정공모방식 등으로 전환	○임업특정연구 개발 사업 개선방안 (2003.1.1)	○임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개발 기대

□ 국유림관리국

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국유재산 매각	○대부지의 연고매각 허용	○'02.11.6일 산림법시행령 개정으로 '02.11.6일 이후 신규 대부지에 대하여는 연고매각 금지	○산림법시행령 제67조 (2002.11.6)	○연고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수요를 억제하여 국유림 보존관리 강화
2.사유림 매수	○산림소유자 수시매도 신청 및 대상지 결정	○사유림매수계획을 본청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도신청서를 접수받아 매수 대상지 선정	○시 책 (2003.1.1)	○대상지선정 및 매수에 공정성·투명성 제고
3.사유입목 매수	○사유입목 매수대상지를 관리소장이 결정 ○담당공무원이 입목수량 조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수림) 권리 양도 허가	○사유입목 매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대부자 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매수대상지는 산림청장이 매수기준에 의거 심사결정 후 예산 배정 ○면적이 100ha 미만인 대부지(분수림)는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배제하거나 타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입목수량 조사 후 감정평가 의뢰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부지(분수림)는 수량조사 포함 일괄감정평가 의뢰 ○분수림 권리양도 허가전에 국가우선매수청약 또는 전문임업인에게 양수기회 부여	○시 책 (2003.1.1)	○매수대상지 선정에 객관성, 투명성 제고

사업명	증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4.국유림 대부 ○ 국유림대부 사 용 허 가 기준	< 신 설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목축·종축용·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준	○ 산림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호의2 (2002.11.6)	○ 특별대책지역안에서 수질오염 등을 예방
○ 대부용도 확대	< 신 설 >	○ 국유림 대부를 위한 산업시설에 야생화 재배시설,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야외촬영시설 추가	○ 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9호, 12호(2002.11.14)	○ 산촌주민 소득증대 및 영화산업 진흥
	○ 국유림 대부를 위한 산업시설중약용식물의 종류를 산림청장이 정함 -산림청장이 정하는 약용식물 재배시설	○ 국유림 대부를 위한 산업시설 중 약용식물의 종류를 명문화 -약용식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약초류 및 약용류)	○ 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9조 (2002.11.14)	○ 산촌주민 소득증대
5.국특회계 운영	○ 국유림사업은 주요 사업비 및 기본사업비를 지방청별로 전액 국특회계에 편성 -인건비, 기본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02예산: 1,278억원	○ 재산관리 이외의 사업은 일반 회계 및 농특회계로 이관 ○ 국유림경영사업비 중 -산림병해충방제, 자연휴양림 조성은 일반회계로 이관 -조림, 육림, 임도는 농특회계로 이관 ※’03 국특예산 :344억원	○ 2003년 예산 내역서 (2003.1.1)	○ 국특회계를 순수 재산관리회계로 유지하여 국특회계 세입 전액을 국유림확대 및 사유입목매수 등에 투자하여 국가 직영임지 확보에 기여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6.자활영립단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업비는 종전대로 지방청별로 편성하고, 주요사업비는 각 사업별 본청 총괄세항에 편성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폐지에 따라 자활영립단 신규 운영 (약 300여명) 	○시 책 (2003.1.1)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활을 지원
7.산촌 기초조사	< 신 설 >	○전국 산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 기초조사 실시 (8개도, 154시·군, 2000여마을)	○시 책 (2003.1.1)	○임업진흥촉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8.영립단 구성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립단구성요건 -임업기능인영립단 1개 영립단에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임업기능인 교육이수자 3인이상 -기계화영립단 1개 영립단에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임업기능인 교육이수자 3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립단구성요건 -임업기능인영립단 1개 영립단에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및 임업기능인 교육이수자 60%이상 -기계화영립단 기능인영립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30%이상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003.7.1)	○우수한 임업기능인 영립단 및 임업기계화 영립단 구성·운영 으로 산림작업기술 향상 도모

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9.임업기계화 영립단 증설	○기계화영립단 1단 (홍천관리소) 운영	○기계화영립단 증설 -지방청별 1개 영립단 창설 ※총 5개 기계화 영립단 운영	○시 책 (2003.1.1)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처와 산림사업의 기계 화 작업추진
10.임업기계 용자금지원	○생산자금 지원자 - 임업기계생산업자	○생산자금 지원자 -한국임업기계협회에 등록된 임업기계생산업체	○시 책 (2003.1.1)	○한국형 임업기계 개발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육성
11.임업기능인 영립단양성	○30단, 360명 조직 운영	○54단, 648명 추가 신규 조직 -국유림 14단 168명 -민유림 40단 480명	○시 책 (2003.1.1)	○우수한 임업노동력의 안 정적 확보 및 산림 작업 의 질적 향상 도모
12.국립수목원 완충지역	○광릉숲보전대책에 의한 개발협의구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지정 및 개발 협의기준 마련 추진	○수 목 원 조 성 및 진 흥 에 관 한법률 제19 조 (2003.2월중)	○완충지역 및 개발 협의 기준 마련 및 엄정한 집 행으로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13.산림박물관 조성	○명칭 : 산림박물관 ○투자규모 1개소당 (국고) -7,000백만원 ○대상지역 : 일반토 지	○명칭 : 산림사료전시관 ○투자규모 1개소당(국고) -2,000백만원 ○대상지역 : 수목원 내	○수 목 원 조 성 및 진 흥 에 관 한법률제7조 (2003.1.1)	○지역별 향토사료 전시관 으로서 내실화 도모
14.돌발해충 약제 지원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특정 등록 농약만 구입 사용	○지역여건에 따라 출현 해충이 다양하므로 적용대상 해충에 기등록된 농약중 관계규정에 따라 직접 구입	○'02.12.10 약중 선정회의 시 결정 (2003.1.1)	○적용대상 해충에 적합한 농약사용으로 합리적인 방제
15.소나무재선 충 방제효 과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또는 수 목피해진단을 할 수 있는 법 인이나 단체로 확대	○산림병해충방 제 규정 (2003.1.1)	○방제효과 제고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6.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 신 설 >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등주요 등산로 정비 - 사업량 : 54km - 소요예산 : 15억	○시책 (2003.1월)	○등산로 정비 관리의 체계화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및 쾌적한 등산 서비스 제공
17.국가탐방로 지정	< 신 설 >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로 지정 관리 -예정지 지정 발표 -법적 뒷받침	○시책 (2003.1월)	○여러 시·군을 거쳐 있는 중요한 등산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한 등산서비스 제공
18.등산학교 운영	< 신 설 >	○건강한 등산문화 정립 및 확산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 -대상 : 청소년, 일반시민 산림공무원 등 -교육시기 : 별도 공고	○시책 (2003.1월)	○올바른 등산문화정립 및 확산을 통한 산림환경 보전 및 등산 만족도 제고
19.산림휴양·문화 종합 정보망구축	< 신 설 >	○산림휴양정보, 산림교육 정보, 산림문화정보, 산촌정보 등을 종합한 포털사이트 구축	○시책 (2003.1월)	○일반국민과 청소년이 쉽게 산림휴양정보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 제공
20.산림학교 운영	○산림교육 시범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장소·시기 : 별도공고	○시책 (2003.1월)	○산림을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
21.숲해설가 양성	< 신 설 >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교육비 등 지원	○시책 (2003.1월)	○양질의 숲해설가 양성 배출로 산림교육의 질 향상 및 활성화 도모
22.녹색수업 (Green School) 확대	○국립수목원 1개소 운영	○전국의 지방수목원(10개소)에서도 녹색수업 운영 - 대상 : 지역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시책 (2003.5월)	○수도권지역에서만 실시되던 녹색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이해 및 산림 사랑 정신 교취
23.산림생태 관광 프로그램 인증	< 신 설 >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개발·운영하는 산림생태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추진	○시책 (2003.5월)	○산림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무분별한 산림생태관광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24.국유자연 휴양림예약	○시기에 불문하고 인터넷 접속 순서에 따라 예약	○국유휴양림 성수기 추첨예약 시스템 도입 -성수기에는 기존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전환	○시 책 (2003.5월)	○여름철 성수기에 폭주하는 예약자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균등한 예약기회 보장과 투명성 확보
25.개인자연 휴양림조성 운영	< 신 설 >	○개인휴양림 운영자금 지원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시 책 (2003.3월)	○개인휴양림의 공공성 확보 및 활성화 도모
26.산림휴양 인터넷 및 자원봉사제	< 신 설 >	○여름방학 기간중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할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대상 : 산림·관광 관련 대학생 등 -인원 : 별도 공고	○시 책 (2003.5월)	○여름철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련 학과 대학생 등에게 실무경험 제공
27.산악레포츠 지구 지정·운영	< 신 설 >	○국·공유림내 임도시설 등을 활용하여 산악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지정·제공	○시 책 (2003.6월)	○급증하는 산악레포츠 동호인에게 적절한 활용공간 제공 및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
28.도시숲 만들기	< 신 설 >	○도시지역의 자투리 국유지에 도시숲 조성 및 국유림에 산림공원 조성 -5개소	○시 책 (2003.1월)	○도시지역의 녹지량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29.학교숲조성	○학교숲 조성사업비 50% 국고보조 -250백만원, 69개교	○학교숲 조성 사업비 100% 국고 보조 -1,500백만원, 150개교	○시 책 (2003.1월)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제고와 도시의 녹지공간 확충 및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30.전국학교숲 대회	< 신 설 >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공모 및 전파 -공모내용 : 별도 공고	○시 책 (2003.1월)	○학교숲 조성사업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전파
31.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신 설 >	○가로수 관리청별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책 (2003.1월)	○체계적인 가로수조성 관리의 유도 및 도시내 숲과 외곽 숲을 연결하는 녹지 축 기능 제고

□ 사유림지원국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정책자금 대출마감일 연장 결정 기관 변경	○사업자금과에서 결정 (사유림지원과)	○해당 사업지원과에서 결정	○농림사업시행 지침 (2002.11.20)	○대출마감일 연장의 타당 성을 높이고 자금의 원 활한 집행 도모
2.정책자금 대출마감일 연장 기간 조정	○필요한 경우 익년 12월말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	○익년 6월말까지 연장 다만, 인·허가 절차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익 년 8월말까지 연장 가능	○농림사업시행 지침 (2002.11.20)	○대출 마감일 연장기간을 최소화하여 대출 마감일 연장의 남용 방지
3.사업자금 집행 확인 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 친자가 서명한 영 수증 또는 세금계 산서를 첨부	○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지원과 가 정한 금액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 로 간주	○농림사업시행 지침 (2002.11.20)	○사업자금 집행 확인 절 차를 현실에 부합 되게 개선하여 정책 자금 용 자 활성화 도모
4.표고생산 기반 지원	○농가당 원목 및 톱 밥 재배시설비지원 : 50백만원	○농가당 톱밥재배 시설지원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원목재배시설비 : 50백만원 -톱밥재배시설비 : 200백만원	○농림사업시행 지침 (2002.1.1)	○실효성있는 톱밥재배 농 가 육성
5.임업용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신 설 >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임 업용 기자재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조세특례제한 법(2003.1.1)	○임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임업기계화 촉진
6.밤생산기반 조성사업	< 신 설 >	○밤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밤 농가에 신규사업 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지원 · 지원비율 : 보조100%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한도 : 농가 16백만원, 법인체 80백만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노령 목 관리 · 지원비율 : 보조60% (국고 30%, 지방비30%), 자부담40% · 지원한도 : 없음	○농림사업시행 지침 (2002.1.1)	○밤재배 농가소득증대 도 모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7.재해발생 우려지에 대 한 산물수집 비용 지원	○육림사업 단비표에 산물수집비용 미반 영	○수해·산불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에 대한 산물 수집비용을 지원	○시 책 (2003.1.1)	○산물수집 비용 지원으 로 수해·산불 등 재해 피해 예방 및 산물 활 용도 제고
8.육림사업 설계·감리 제도 시범 추진	< 신 설 >	○민육림 육림사업 설계·감리 제도 시범 도입(8개 시·도, 16개 시·군)	○시 책 (2003.1.1)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 소 및 기술적 육림사업 추진 ○육림사업 설계·감리제 도입으로 육림사업 활 성화
9.부가가치세 사업단비 반영	○육림사업 단비표에 부가가치세 미반영	○육림사업 단비표에 부가가치 세 반영	○시 책 (2003.1.1)	○육림사업 설계시 부가가 치세 미반영으로 부가가 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 ○산림사업 시행기간 형평 성 확보 및 사업의 질 향상
10.육림사업 차등 설계	○사업단비표에 의한 일괄 설계	○사업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비의 10%범위 내에서 자율 설계	○시 책 (2003.1.1)	○사업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설계함 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 진 가능
11.수계관리 기금 활용 및 댐주변 정비 사업 추진	< 신 설 >	○수계관리와 지역주민 지원 관 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수 계 관리기금을 수원함양 관 련 산림사업에 투자될 수 있 도록 조치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수원함양을 위한 육림 포 함 추진	○한강수계상수 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낙동강수 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 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 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 에 관한 법률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 책 (2003.1.1)	○수계관리기금 등을 활용 하여 수원함양육림 및 댐주변정비 사업 추진

사업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2. 수원함양 조림지 사후 관리비 지원 확대	○5대강 유역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일반육림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재원부담 비율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정부의 물관리 대책에 부응하는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 -3,000ha(11억원) -재원부담 : 국비70% 지방비30%	○시 책 (2003.1.1)	○물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사업성과 거양 ○수원함양조림으로 추진한 조림지 활착 및 생육 촉진으로 조림성공 유도 ○산주부담 경감
13.「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 시범 추진	< 신 설 >	○농산촌에 마을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관광과 연계한 소득 증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복지마을을 시범 조성 -대상마을 : 18개 마을	○시 책 (2003.1.1)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농산촌 소득 증대 ○마을별 테마를 설정하여 특색있는 마을숲을 조성함으로써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
14.산지목재 비축제 도입	< 신 설 >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산림을 벌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대상산림 : 벌기령이 경과한 산림을 벌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산림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여 계약 체결한 산림 -지원조건 : 산주예상수입액의 70%까지 용자(연리3%,10년), 보험료 소요액의 50% 보조 -'03사업량 : 3만㎡, 8억원 -향후 10년간 320만㎡ 추진 예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3.1.1)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 제한에 대비한 목재자원 비축과 크고 품질 좋은 국산재 생산으로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산주 소득 향상에 기여

사 업 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행일	변경사유 및 효과
15. 임목벌채 제도 개선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목벌채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벌채 기준을 개선 - 30ha 이상 대면적 모두베기는 금지, 1개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 사이에 20m 이상의 수림대 조성 -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기준으로 30% 이내로 제한 - 모수작업은 1ha에 15~20본 존치 - 육림을 위한 벌채는 수관이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 실행하되 미래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 식생은 존치시켜 임지 보호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수간이 심하게 굵었거나 성장상태가 불량한 입목에 한하여 실시 - 운재로의 노퍽은 2m내외로 하되 최대 3m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법시행규칙 (2002.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 방지 및 산림 재해 사전 예방
16. 국산 원자재 구매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국내에서 생산한 임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려는 자 (폐목재 포함) - 임산물 실수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 단기소득임산물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 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제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결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 자금 수요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국산임산물의 이용을 촉진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제정: 2002.12.31, 시행: 2003.1.1)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가운데 수요자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후관리, 보고사항 및 기타사항은 생략했습니다. -편집실-

1. 목적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 공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별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은 따로 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 의한다.

2. 면세유와 적용원칙

가. 면세유란

면세유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윤활유를 말한다.

나. 적용원칙

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3.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및 임업기계

가. 공급대상 임업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의 2호에서 정한 임업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및 벌목업 또는 영림 및 벌목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① 개인
- ②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나. 공급대상 임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2항 별표 3에서 정한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로 한다.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②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분기별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장비가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분기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시기를 감안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면세유 공급기준 및 방법

가. 공급기준

- (1) 연간 공급 기준량은 “붙임 1”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붙임 2”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 공급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 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 (2) 윤회유 연간 공급 기준량은 기종별 주 연료 공급 기준량의 5%로 한다.

- (3) 시장·군수·국유림관리소장, 임업연구원장은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임업기계 보유량조사」(통계법 제3조 규정의 일반통계)를 하여 폐임업기계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산림조합장에게 통보하여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급방법

- (1)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량의 50%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계획내역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한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림사업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한다.
- (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5. 면세유류 소요량 증량 조치

태풍 및 수해 등으로 기종별 면세유 소요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도지사·지방산림관리청장, 임업연구원장으로부터 증량에 대한 조사 상황을 통보받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증량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이하생략).

<붙임1>

임업기계별 시간당 유류사용량 조건표

기종명	규격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비고
		휘발유	등유	경유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자동 지타기	70cc이하	1.7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2			0.9	
	3			1.3	
	4			1.7	
	5			2.0	
	6			2.2	
	7			2.5	
	8			3.0	
	9			3.5	
	10			3.8	
	15			4.2	
	20			4.4	
	25			8.5	
	30			10.2	
	35			11.2	
	40			12.8	
	45			13.2	
	50			15.2	
	60			15.9	
	70			16.2	
	80			20.6	
	90			21.6	
100			24.6		
110			26.2		
120			29.2		
130			29.4		
140			32.2		
150			34.2		
160			35.7		
170			37.2		
180			40.0		
190			42.2		
200			44.0		
210			45.8		

<붙임2>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건표

기종명	구분	사용시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전 규격	240
2. 임업용 동력천공기	"	300
3. 임업용 윈치	"	360
4. 임업용 동력집재기	"	300
5. 목재파쇄기	"	400
6. 톱밥제조기	"	400
7. 자동지타기	"	300
8. 동력상하차기	"	300
9. 동력임내차	"	300
10. 타워야더	"	300

<붙임3·4> : 생략